청주문화원 회원관리 규정

제정: 2018. 02. 22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정관 제2장의 규정에 의거 청주문화원(이하 "본원"이라 한다) 회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본원의 민주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.

제2조(적용범위) 본원의 회원관리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본 규정에 의한다.

제3조(회원의 규정) 본원의 회원은 정관 제7조에 의하여 규정된 회원으로 한다.

제4조(정회원)

- ①정회원은 청주시에 거주하는 자, 사업장 및 직장을 두고 있는 자, 청주시 출신자로서 본원의 설립취지에 찬동하는 자.
- ②정회원은 본원설립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써 정관 제7조 절차에 따라 청주문화원으로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.
- ③정회원은 정관 제8조 회원의 권리와 제9조 의무를 가진다.
- ④원장은 정회원의 가입 이후 첫 이사회에 이를 보고, 승인 받아야 하며, 정회원이 정 관 제9조 제3호의 회비 및 제 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회원자격을 인정한다.
- 제5조(특별회원) 특별회원은 거주지를 불문하고 본원의 발전에 기여하고 본원 설립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.

제6조(준회원) ①준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으로 한다.

- 1.문화강좌 및 문화원 사업에 참여하는 자 등.
- 2.본원 문화예술단체의 단원으로 위촉된 자 등.
- ② 준회원은 원장 앞으로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.

제7조(회원의 자격제한) 정회원이 전년도 연회비를 당 해 연도 1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정관 제8조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없다.

제8조(회원의 권리) 본원 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.

1.정회원은 총회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총회 개최시기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한 본원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총회 의결권을 가진다.

총회 개최시기	1. 1 ~ 3. 31	4. 1 ~ 12 . 31
총회 의결권	전년도 연회비 납부회원	당해 연도 연회비 납부회원

다만 총회 의결권 가운데 <u>임원선출의 건(선거권, 피선거권)은 회원가입 승인일로부터</u> 1년 후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.

2.준회원은 본원의 문화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나 총회에 참여와 의결권은 없다.

제9조(회원의 의무) 본원의 회원은 정관 제9조의 의무를 가진다.

- 1.본원의 정관 및 규약의 준수
- 2.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준수
- 3. 연회비 및 제 부담금 납부

제10조(회원의 회비 등)

1.회원의 연회비 금액은 이사회에서 다음과 같이 정한다.

구 분	연회비
정회원	12만원
특별회원	12만원
준회원	없음

다만 본원 정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은 문화원발전기금과 연회비 금액을 이사회에서 다음과 같이 정한다.

구 분	발전기금 +연회비
원 장	200만원
부원장	50만원
이 사	30만원

- 2.연회비는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한다.
- 3.신입회원은 회원가입 승인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. 만약 기한 내에 연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회원가입 승인이 취소된다.
- 4. 기부금 또는 찬조금 등을 납부하여 문화원 발전에 기여한 경우 그에 준하는 회원의 자격을 원장이 따로 정하여 이사회에서 의결할 수 있다.

제11조(회원의 회계 연도) 본원의 회원이 납부한 회비의 회계처리는 정부의 일반회계 연도에 따른다.

제12조(회원의 상벌)

- ①회원으로써 본원의 발전에 기여한 자는 포상할 수 있다.
- ②회원으로써 본원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8조 회원의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는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,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.

제13조(정회원과 특별회원의 혜택)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.

- 1.본원에서 발행하는 인쇄물 및 각종 문화정보 제공
- 2.본원 소장 각종 자료 열람
- 3.본원에서 주최하는 문화행사 등 우선 초청
- 4.회원을 위한 문화 향수 및 소양개발 프로그램 참여
- 5.회원은 문화원에서 정한 강좌 수강료 및 답사비 등 참가비할인
- 6.본원의 회원으로서 포상
- 7.기타 본원에서 주최하는 각종사업 및 행사 참여혜택 등

제14조(회원의 탈퇴 및 자격상실) 회원은 정관 제10조에 의거 원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하였거나, 회원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회원 자격이 상실된다.

부 칙(2018, 02, 22,)

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